



202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 학사안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목 차

노동대학원 개요	-----	1
교수진, 행정실	-----	3
학사안내	-----	4
붙임 자료		
2021학년도 학사일정	-----	1
2021-1 강의시간표	-----	3
각 학과별 교과과정	-----	5
각 교과목 교수요목	-----	11
대학원 학칙	-----	17
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	24
노동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	-----	31
연락처	-----	33



노동대학원 개요

노동대학원은 1965년 국내 최초로 설립한 노동문제연구소의 단기노동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여 1995년에 설립된 노동전문교육기관이다. 노동대학원의 설립목적은 노사전문가 배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발전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노동대학원은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 및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지도적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노동대학원의 학과는 5개 학과로서 노동관련 학문의 제분야중에서 우리 현실에 맞으면서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동법학과(법학 석사), 노사관계학과(노사관계학 석사), 노동경제학과(경제학 석사), 노동복지·정책학과(사회학 석사), 인력관리학과(인력관리학 석사) 등 5개 학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학과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법학과**는 노동법제도를 보다 이론적으로 철저히 연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실무적인 법적 해결능력 배양을 모색하고, 노동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함양하고자 한다.

노사관계학과는 산업평화 유지와 노사갈등 및 분쟁해소와 같은 소극적인 갈등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개발, 성과배분, 경영참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구축방안 등도 주요 교육내용으로 다룸으로써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노사관계전문가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경제학과는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관련 제반 주제들을 이론적이며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각 주제들이 가지는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 및 각 국가별 고유한 사회 및 제도적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노동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복지·정책학과는 오늘날의 사회변화와 노동현실을 직시하면서 노동복지와 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물론 선진사회를 위한 노동복지 및 정책능력 제고에 초점을 둔다.

인력관리학과는 후기산업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업 내의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더욱 발전적인 노동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전략과 구조, 운영원리, 그리고 기업조직 내 개인과 집단역학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능력을 갖추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 학과의 교육목적은 노사정 및 실무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노동대학원 인적구성의 특징과도 부합해서 폭 넓고 깊이 있는 토론과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현장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정보교환의 자리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동향에 대한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된다.

노동대학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교과목 편성 등을 통해 노동관계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노동대학원은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관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노동대학원은 상 석사과정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부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교육과정인 <근로복지 정책과정>, 노사정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노사협력전문가과정>,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 행정실

1. 대학원장 및 주임교수

직함	성명	소속학과
노동대학원장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임교수	김상중(노동법학과) 김광현(노사관계학과) 김세익(노동경제학과) 김원섭(노동복지·정책학과) 김태규(인력관리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특임교수	이종선	노동대학원 교수

2. 행정지원

- 행정직원
 - 차장: 김승환
 - 직원: 이현정, 오수진
- 사무실: 국제관 1층 124A호
- 연락처: 02-3290-1411
- 근무 시간

구분	근무시간	
학기중	월 - 수(강의가 있는 요일)	10:30 - 20:30
	목 - 금	09:00 - 17:30
방학중	월 - 금	09:00 - 17:30



학사안내

1. 학사일정

- 2021학년도 학사일정 <별첨 PP. 1-2>
-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일시	학사일정	비고
2.22(월) - 26(금)	1학기 수강신청	
3.2(화)	1학기 개강	
4.20(화) - 26(월)	1학기 중간고사	
6.15(화) - 21(월)	1학기 기말고사	

2. 수업요일 및 강의시간

- 학기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강의
- 1교시: 18:45 ~ 20:15
- 2교시: 20:25 ~ 21:55
- 강의실 : 국제관 1층, 2층 강의실
- 2021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별첨 PP. 3-4>

3. 학위청구(졸업) 종류

- 학위청구 방법: “교과트랙”과 “논문트랙” 두 종류가 있음.
 - 노동법학과는 “논문트랙”으로 지정
- 트랙신청 시기 : 4학기 진입시 신청
- 트랙신청 절차 :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제출
- 5학기 소정기간에 트랙변경 가능

4. 학점이수 안내 (각 학과별 교과과정 참조)



○ 수료 요구학점

	기초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계
교과트랙	3과목 (6학점)	3과목 (6학점)	11과목 (22학점)	이수 및 학점인정 불가	17과목 (34학점)
논문트랙			7과목 (14학점)		2과목 (4학점)

- “지도교수지정과목”은 상기 학점과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교과트랙”에서는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교과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이수한 경우에도 수료 요구학점 계산시 제외됨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 각 학과별 교과과정표 <붙임 PP. 5-10>
- 개설과목별 교수요목 <붙임 PP. 11-16>

5. 지도교수 배정

- 학과별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로 배정
- 주임교수 교체시 변경된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로 자동 변경
- 논문트랙 학생은 논문트랙 신청시(4학기) 지도교수 변경 가능

6. 지도교수지정과목

-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하거나, 각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입학자는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지도교수지정과목 대상자 선정 방법

	세부사항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들은 입학전 소정의 기간내 확인하여 홈페이지에 공지 ● 학부 졸업 학과나 지정 교과목을 이미 학부에서 이수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면제 처리 ● 노동복지정책학과는 1차에서 대상자 선정하지 않음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서 면제가 되지 않은 신입생 및 노동복지정책학과 신입생 중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께 면제 신청 요청(학부 성적표, 면제 신청서 지참) ○ 지도교수 동의를 받아 행정실 제출 ○ 제출기한: 3월 5일(금)까지 ● 상기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신입생은 지도교수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학과별 지도교수지정과목 목록**

학 과	지도교수지정과목	학 점	비 고
노동법학과	법학개론	2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음.
노사관계학과 인력관리학과	경영학원론	2	
노동경제학과	경제학원론	2	
노동복지·정책학과	행정학원론 사회학개론	2 (택1)	

- 지도교수지정과목은 1-2학기 이내 이수 요청(매년 2학기에 개설)

7. 수강신청

○ **일정**

	일자	수강가능 교과목
수강신청	2.22(월) 10:00 - 2.24(수) 16:00	기초공통 및 소속학과 개설 교과목
	2.24(수) 17:00 - 2.26(금) 10:00	전체 교과목
수강정정	3. 9(화) 10:00 - 3.11(목) 17:00	전체 교과목

- 수강신청 학점: 8학점(4과목)까지 신청 가능
단, 선수과목은 8학점 외 추가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방법 (노동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 홈페이지 주소: <http://sugang.korea.ac.kr/graduate/>
 - 학번, 비밀번호 입력
(신입생은 비밀번호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수강신청 초기화면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강신청 시스템

2021 | 1학기

학점

학수번호

캠퍼스 서울

요일 전체--

분반

대학원 노동대학원

교시 전체-- ~ 전체--

교과목명

노동법학과

교시확인표

담당교수

• 학수번호, 교과목명, 교수명 검색시 대학원, 학과 조건은 무시됩니다.

• 학수번호 클릭시 강의계획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교과목명	담당교수
ULL502	01	전공필수	개별적근로관계법	하경호
ULL502	02	전공필수	개별적근로관계법	박종희
ULL509	00	전공필수	노동소송법론	권오성
ULL700	00	전공선택	노동법연구방법론	강선희
ULL710	00	전공선택	노동법수용법연구	차도원

- 강의계획안 보기 (상기 화면에서 학수번호 클릭)

8. 강의 형태

- 2021학년도 1학기는 온라인 강의,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로 시행
-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강의 형태(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교과목 제외)

구분	강의수 및 교과목
100% 온라인 강의	18개 강의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	8개 강의
100% 오프라인 강의	<없음>

- 강의형태에 따른 세부 안내

강의형태	세부사항
100% 온라인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통하여 강의 (Collaborate, Kaltura, Zoom 중 교수자가 택1) ● 사용방법: https://kultips.korea.ac.kr ● 원활한 수강을 위하여 사용방법 매뉴얼 숙지 요청
온/오프라인 병행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 114, 115, 122, 123, 216, 218호 강의실에 설치 ● 교수는 지정된 강의실에 와서 강의 ● 학생들은 강의실에 와서 수강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



- 2021학년도 1학기에는 100% 오프라인 계획은 아직 없음

9. 졸업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등록학기	수료요구학점	지도교수지정 과목 대상자	종합시험	논문 통과	평균평점
5학기 이상 등록	이수	선수과목 이수	합격	논문트랙 학생에 한함	3.0 이상

10. 논문지도 학점(논문트랙 학생에게만 적용)

- 4학기에 ‘논문세미나’, 5학기에는 ‘논문지도’ 교과목을 이수
- 4학기 초에 ‘논문세미나 및 지도교수신청서’,
5학기 초에 ‘논문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 날인 후 행정실로 제출
- 신청서 양식: 노동대학원 홈페이지 석사과정> 서식 및 자료

11. 종합시험(석사학위 자격시험)

- 시험과목: 각 학과별 전공과목(필기시험)
- 응시자격: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 시험일자: 매년 4월, 10월 중
-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1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2년 6개월(5학기)
- 재학연한: 7년(14학기)

13.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재입학)

- 휴·복학 신청방법
 - 포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 신청시기: 매학기 개강 전 1달 이내(매 학기 세부일정 공지)
 - 휴/복학 반영 시기: 3월 1일, 9월 1일자로 일괄 학적변동 처리
 - 학생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학적 반영
 - 휴학 후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만료된 때에 소정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
- 통산 휴학기간: 재학중 최대 3학기까지 휴학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불가
 - 신입생은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 질병을 제외하고는 휴학 불가
 - 휴학 종류

구분	세부사항
일반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신청시 1학기(6개월) 또는 2학기(1년)까지 신청
군입대 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휴학 가능 ●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임신/출산 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까지 가능 ●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육아 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 ● 통산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학기중 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신청 ●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질병) 또는 증빙서류 제출

14. 장학금

- 일반장학금

종류	세부사항
성적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취득학점: 6학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기 이전에 2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4학점 이상 ○ 최소 취득학점에 아래 학점은 제외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지도교수지정과목) ● 장학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장학금(150만원) ○ 우수장학금(120만원) ● 동점자 발생시 순위 취득학점수, 학기수가 많은 학생, 전업학생, 연장자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이 미등록할 경우 학과별 성적 차순위자에게 지급
면학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신청한 자에게 지급 가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은 대학원의 장학금 예산으로 함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대학원 장학기금 사용 가능 관련 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 기금장학금

종류	세부사항
노동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 등 노동관련 단체에서 전업으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 장학금액: 150만원
후배사랑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학기 졸업생이 기탁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액: 120만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 노동대학원 장학기금 관련 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 학비감면

- 6학기 이상을 등록하는 학생 중 교과학점을 3학점 이내로 신청한 경우 당해 수업료의 2분의 1 감면

15. 홈페이지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http://korea.ac.kr>
- 고려대학교 포탈 <http://portal.korea.ac.kr>
 - 본교 아이디 신청
 - 학적사항 변동 조회, 수강신청 내역조회, 성적조회, 등록금 고지서 출력,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제증명서 발급 등
 - 본교 규정 확인
 - 포탈시스템 가입은 입학 후 3월 1일부터 가능
- 노동대학원 홈페이지 <http://kulabor.korea.ac.kr>
 - 노동대학원 공지는 석사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Q&A를 통하여 질의
- 교수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수들의 약력 확인 가능(구축 중)
- 각 교과목별 교수요목 확인 가능
- 블랙보드(학습관리시스템)
 - 포탈 가입 후 우측 메뉴에 블랙보드 로그인
 - 강의 자료 확인, 과제 제출 등 강의 관련으로 활용 가능
 - 사용방법: <https://kultips.korea.ac.kr>

16. 학생증 발급 및 재발급

- 신규발급
 - 금융기능 포함, 불포함 중 택1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 기간: 2.16(화) 16시까지
 - 수령 일자: 3.3(수)부터 행정실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지참)
- 미신청자의 경우
 - 3월 15일(월)부터 신청 가능
 - 금융기능: 고대 하나은행 지점(인문사회계 고대지점) 방문 신청
 - 비금융기능: 원스톱서비스센터(중앙광장 B111호)나 행정실로 신청 (업무시간인 17:30 이후 신청할 경우 행정실 방문 신청)
 - 신분증 사진(증명 또는 여권 사진 1매) 지참
- 학생증 재발급
 -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신청 <행정실에서 대행 가능>
 - 재발급수수료 5,000원

17. 건물 출입 및 방역

- 국제관 출입 신청 방법
 - 국제관은 2층 출입구에서만 출입 가능



- 학기중에는 08:30 - 20:30까지 국제관 2층 출입문 개방,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후 입장 가능
- 상기 시간외에 국제관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 포탈 - “정보생활” - “공간예약관리” - “공간예약관리(서울)” 클릭
 - 출입신청 메뉴 - 출입신청 클릭
 - 호실 선택 버튼 클릭 - 국제관 124B(학생휴게실) 선택 (강의실로 설정하면 안 됨)
 - 출입 신청기간: 2021. 8.31까지
 - 신청사유: “노동대학원 **학과 학생”으로 명기 요청
 - 행정실에서 승인 후 사용 가능
 - 학생증을 2층 출입문 세콤 박스에 클릭하면 국제관 입장 가능

출입신청 등록 home > 출

신청자	이현정 (직원-여)	소 속	노동대학원 / 노동대학원행정실
출입용신분증선택	이현정(노동대학원/노동대학원행정실) [선택된 신분증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000-0000-0000	신청자 이메일	grace20@korea.ac.kr
임시카드번호	[] - [] ※ 임시카드 사용시에만 입력하세요.		
신청사유	노동대학원 *** 강의 수강생		

출입기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승인 받아도 이용에 제한 됩니다.

국제관(011380) [v] FL01(지상1층) [v] 124B(학생휴게실) [v]

출입기간 : 2020-09-01 ~ 2020-12-21

▶ 승인담당: 김승환 노동대학원 ☎ 출입문의처: 노동대학원/노동대학원

- 방역 조치
 - 강의 시작 전 환기 조치
 - 국제관 출입구, 행정실, 학생 휴게실에 손소독제 비치



- 향균 에탄올 티슈를 비치하여 학생 스스로 손이나 책상을 닦을 수 있도록 준비

18. 주차 안내

- 정기 주차권: 월 20,000원
 - 신청방법: 주차관리소(중앙광장 지하 3층)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학생증 또는 등록금영수증
- 일일 주차권: 4,000원, 4시간 주차권: 3,000원
- 주차권 구입은 주차관리소(중앙광장 지하 3층)에서 판매하며, 행정실에서도 대행 구매하여 일정 분량을 보유하고 있음.
- 주차관리소: 02-3290-1866

19. 학생예비군 전·출입 안내

- 신고요령
 - 포탈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이용 신고
 - 병적사항(전역일자, 계급, 주특기 등)과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하고 차후 병무행정팀에 확인.
 - 신청 후 2~3일 이후 <http://www.yebigun1.mil.kr>에서 확인 가능
 - 전입신고대상자 중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시 병무행정팀에 필히 상담하여야 함.(교육시간 관계)
- 병무행정팀: 02-3290-1201, 1204

20. 편의시설 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 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korea.ac.kr>
 - 좌석/시설예약 등을 통하여 좌석 예약 가능

구 분	자료실	학기중	토요일	방학기간
-----	-----	-----	-----	------



중앙도서관	■ 신관 · Information Center	09:00 ~ 22:00	09:00 ~ 15:00	09:00 ~ 19:00
	참고정보실	09:00 ~ 22:00	09:00 ~ 15:00	09:00 ~ 19:00
	· 어문학자료실 · 사회과학자료실 · 인문/자연과학자료실	09:00 ~ 22:00	09:00 ~ 15:00	09:00 ~ 19:00
	■ 구관 · 대출실 · 한적실(사무실)	09:00 ~ 17:30	휴무	09:00 ~ 16:30
	· 아연자료실	09:00 ~ 17:30	휴무	09:00 ~ 16:30
법학도서관	· 법학도서실	09:00 ~ 22:00	09:00 ~ 15:00	09:00 ~ 19:00
	· 법학정보실	09:00 ~ 17:30	휴무	09:00 ~ 16:30
학술정보관 (CDL)	· 국제기구자료실 · 정보검색실 · 멀티미디어열람실	09:00 ~ 22:00	09:00 ~ 15:00	09:00 ~ 19:00
	· MPL	09:00 ~ 17:30	휴무	09:00 ~ 16:30
과학도서관	· 단행본실 · 연속간행물실	09:00 ~ 22:00	09:00 ~ 15:00	09:00 ~ 19:00
	· 멀티미디어실 · 브라우징룸 · 과제작성실	09:00 ~ 17:30	휴 무	09:00 ~ 16:30

○ 고대병원 진료비감면 혜택(10%~20%감면)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학생은 감면불가)
- 문의전화: 원무팀 02-920-5297

교우 (특수대학원재학생포함)	건강보험			건강진단			보철·교정			일반 (건강보험 미적용)		
	구분	본인	배우자	직계	본인	배우자	직계	본인	배우자	직계	본인	배우자
입원	10	-	-	30	30	30	10	-	-	20	10	10



○ 운동시설 이용

구분	세부사항
화정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트니스, 스쿼시, 암벽등반, 요가, 필라테스를 이용 가능 • 강습 프로그램 및 정규수업도 실시
하나스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트니스센터 이용 가능, 회원제 운영
4.18헬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트니스센터 이용 가능, 회원제 운영
녹지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잔디구장, 농구, 트랙으로 구성 • 축구, 야구, 각종 체육행사 이용 가능

- 포탈 - 정보생활 - 휘트니스센터 or
포탈 - 정보생활 - 체육시설 메뉴에 가서 세부사항 확인 및 등록 가능

- 교내 와이파이 사용
 - 포탈 아이디와 비번으로 사용 가능
- 고려대학교 이메일 사용(gmail 기반)
-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가능

21. 학칙 및 규정 <포탈에서 전문 확인 가능>

- 대학원 학칙 <붙임 PP. 17-23>
- 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개정안) <붙임 PP. 24-30>
- 노동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개정안) <붙임 PP. 31-32>
- 참고규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2021학년도 학사일정

월	일(요일)	학사내용	비고
2월	1(월)~25일(목)	1학기 휴/복학, 재입학 신청	
	11(목)~13(토)	설날(공휴일)	
	20(토)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예정)	
	20(토)~3.5(금)	신입생 선수과목 면제신청	
	22(월)~26(금)	1학기 수강신청	
	19(금)~25(목)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25(목)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예정)	
3월	01(월)	삼일절(공휴일)	
	02(화)	1학기 개강	
	09(화)~11(목)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08(월)~19(금)	선수과목 면제신청서 제출	
	08(월)~12(금)	전기 종합시험 신청	
	15(월)~24(수)	학위청구트랙 신청(4학기)	
	22(월)~31(수)	논문제안서 제출(5학기)	
25(목)	전기 종합시험 시행		
4월	01(목)~23(금)	학위논문 중간발표(학과별 진행)	
	05(월)~26(월)	2021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5(목)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20(화)~26(월)	1학기 중간고사	
5월	05(수)	개교기념일, 어린이날(공휴일)	
	16(일)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19(수)	부처님오신날(공휴일)	
6월	06(일)	현충일(공휴일)	
	11(금)	2021학년도 전기 합격자 발표(예정)	
	11(금)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 마감	
	15(화)~21(월)	1학기 기말고사	
	22(화)	여름방학 시작	
	30(수)~7.02(금)	완제본 논문 접수	
8월	02(월)~25(수)	2학기 휴/복학, 재입학 신청	
	15(일)	광복절	
	21(토)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식(예정)	
	20(금)~27(금)	2학기 등록	
	23(월)~27(금)	2학기 수강신청	

월	일(요일)	학사내용	비고
9월	8.21(토)~ 9.10(금)	신입생 선수과목 면제신청	
	01(수)	2학기 개강	
	03(금)~10(금)	후기 종합시험 신청	
	06(월)~17(금)	학위청구트랙신청(4학기)	
	08(수)~10(금)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13(월)~17(금)	선수과목 면제신청서 제출	
	20(월)~22(수)	추석(공휴일)	
	23(목)	후기 종합시험 시행	
	23(목)~30(목)	논문제안서 제출(5학기)	
10월	01(금)~29(금)	학위논문 중간발표(학과별 진행)	
	03(일)	개천절(공휴일)	
	04(월)~25(월)	2022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4(목)	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20(수)~26(화)	2학기 중간고사	
11월	07(일)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12월	03(금)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예정)	
	03(금)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10(금)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입력 마감	
	15(수)~21(화)	2학기 기말고사	
	22(수)	겨울방학 시작	
	25(토)	기독탄신일(공휴일)	
2022 1월	01(토)	신정(공휴일)	
	03(월)~05(수)	완제본 논문 접수	
	31(월)~2.2(수)	설날(공휴일)	
2월	3(목)~25(금)	1학기 휴/복학, 재입학 신청	
	18(금)~25(금)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	
	19(토)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예정)	
	21(월)~23(수)	1학기 수강신청 예정	
	25(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예정)	

※ 상기 학사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021학년도 1학기 강의시간표

학과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교수명	강의시간	비고
노동대학원	ULC301	00	노동법개론	이준희	화(10-11) 국제관 114호	온라인
	ULC302	00	노사관계론	정경은	수(10-11) 국제관 218호	온라인
	ULC303	00	노동경제론	김송희	월(8-9) 국제관 216호	온라인
	ULC304	00	조사방법론	김준호	수(8-9) 국제관 217	온라인
노동법학과	ULL502	01	개별적근로관계법	하경호	화(8-9) 국제관 122	온라인
	ULL502	02	개별적근로관계법	박종희	월(8-9) 국제관 122	병행
	ULL509	00	노동소송법론	권오성	수(10-11) 국제관 217호	온라인
	ULL700	00	노동법연구방법론	강선희	수(8-9) 국제관 123	병행
	ULL710	00	노동법특수문제연구Ⅱ	차동욱	월(10-11) 국제관 122	병행
	ULL711	00	비교노동법 I	이은주	화(8-9) 국제관 218호	온라인
	ULL901	01	논문세미나	박지순		논문
	ULL901	02	논문세미나	박종희		논문
	ULL902	01	논문지도	박지순		논문
	ULL902	02	논문지도	박종희		논문
노사관계학과	UIR501	00	노사관계이론	김유선	월(8-9) 국제관 114호	온라인
	UIR503	00	공공부문노사관계	유병홍	화(10-11) 국제관 216호	온라인
	UIR703	00	노동쟁의및조정중재	정경은	수(8-9) 국제관 218호	온라인
	UIR704	00	경영참가및노사협조	이원희	월(10-11) 국제관 217호	온라인
	UIR901	00	논문세미나	권성우		논문
	UIR901	01	논문세미나	김광현		논문
	UIR902	00	논문지도	권성우		논문
	UIR902	01	논문지도	김광현		논문

노동경제 학과	ULE501	00	노동시장론	김승희	월(10-11) 국제관 216호	온라인
	ULE502	00	단체교섭론	김성희	화(10-11) 국제관 122	병행
	ULE700	00	노동경제연구방법론	김세익	화(8-9) 국제관 217호	온라인
	ULE901	00	논문세미나	김세익		논문
	ULE902	00	논문지도	김세익		논문
노동복지· 정책학과	ULP503	00	노동복지론	이문호	화(10-11) 국제관 123	병행
	ULP700	00	노동복지정책연구방법 론	김원섭	월(8-9) 국제관 123	병행
	ULP706	00	복지국가론	이종선	수(8-9) 국제관 122	병행
	ULP709	00	사회적기업개론	정헌주	수(10-11) 국제관 123	병행
	ULP901	00	논문세미나	김원섭		논문
	ULP902	00	논문지도	김원섭		논문
인력관리 학과	UHR504	00	인력관리	김영신	화(8-9) 국제관 216호	온라인
	UHR505	00	조직심리학	이목화	화(10-11) 국제관 217호	온라인
	UHR700	00	인력관리연구방법론	김태규	수(10-11) 국제관 216호	온라인
	UHR703	00	인력관리세미나	김윤호	수(8-9) 국제관 216호	온라인
	UHR704	00	조직개발론	고욱	월(8-9) 국제관 218호	온라인
	UHR901	00	논문세미나	김태규		논문
	UHR902	00	논문지도	김태규		논문

각 학과별 교과과정

1. 노동법학과 (ULL)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지도교수 지정과목	ULL101	법학개론	2	-	*지도교수지정과목 지정자 이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기초공통과목 (3과목, 6학점)	ULC301	노동법개론	2	2	
	ULC302	노사관계론	2	2	
	ULC303	노동경제론	2	2	*2과목 중 택1
	ULC304	조사방법론	2	2	
전공필수과목 (3과목, 6학점)	ULL501	집단적 노사관계법	2	2	
	ULL502	개별적 근로관계법	2	2	
	ULL509	노동소송법론	2	2	
선택과목 (교과: 11과목) (논문: 7과목)	ULL700	노동법연구방법론 (2013/2 신설)	2	2	*타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ULL705	민사책임법론	2	2	
	ULL709	노동법특수문제연구 I	2	2	
	ULL710	노동법특수문제연구 II	2	2	
	ULL711	비교노동법 I	2	2	
	ULL712	비교노동법 II	2	2	
		다른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ULL901	논문세미나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4학기에 이수
	ULL902	논문지도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5학기에 이수
졸업요구학점	논문트랙 30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2. 노사관계학과 (UIR)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지도교수 지정과목	UIR101	경영학원론	2	-	*지도교수지정과목 지정자 이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기초공통과목 (3과목, 6학점)	ULC301	노동법개론	2	2	
	ULC302	노사관계론	2	2	
	ULC303	노동경제론	2	2	*2과목 중 택1
	ULC304	조사방법론	2	2	
전공필수과목 (3과목, 6학점)	UIR501	노사관계이론	2	2	
	UIR502	비교노사관계론	2	2	
	UIR503	공공부문노사관계	2	2	
선택과목 (교과:11과목) (논문: 7과목)	UIR700	노사관계연구방법론 (2013/2 신설)	2	2	*타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UIR701	노동운동사	2	2	
	UIR702	노사관계세미나	2	2	
	UIR703	노동쟁의 및 조정중재	2	2	
	UIR704	경영참가 및 노사협조	2	2	
		다른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UIR901	논문세미나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4학기에 이수
	UIR902	논문지도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5학기에 이수
졸업요구학점	교과트랙 34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논문트랙 30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3. 노동경제학과 (ULE)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지도교수 지정과목	ULE101	경제학원론	2	-	*지도교수지정과목 지정자 이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기초공통과목 (3과목,6학점)	ULC301	노동법개론	2	2	
	ULC303	노동경제론	2	2	
	ULC302	노사관계론	2	2	*2과목 중 택1
	ULC304	조사방법론	2	2	
전공필수과목 (3과목,6학점)	ULE502	단체교섭론	2	2	
	ULE501	노동시장론	2	2	
	ULE505	노동조합론	2	2	
선택과목 (교과:11과목) (논문: 7과목)	ULE700	노동경제연구방법론 (2013/2 신설)	2	2	*타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음.
	ULE702	노동경제세미나	2	2	
	ULE703	노동시장세미나	2	2	
	ULE704	노동과정론	2	2	
	ULE705	비교노동체제론	2	2	
	ULE706	노동조합및단체교섭 세미나	2	2	
		다른 학과의 전공필 수 및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ULE901	논문세미나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4학기에 이수
	ULE902	논문지도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5학기에 이수
졸업요구학점	교과트랙 34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논문트랙 30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4. 노동복지·정책학과 (ULP)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지도교수 지정과목 (1과목, 택 1)	ULP101 ULP102	행정학원론 사회학개론	2	-	*지도교수지정과목 지정자 이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기초공통과목 (3과목, 6학점)	ULC301	노동법개론	2	2	*2과목 중 택1
	ULC302	노사관계론	2	2	
	ULC303	노동경제론	2	2	
	ULC304	조사방법론	2	2	
전공필수과목 (3과목, 6학점)	ULP503	노동복지론	2	2	
	ULP507	사회보장론	2	2	
	ULP508	노동사회학	2	2	
선택과목 (교과:11과목) (논문: 7과목)	ULP700	노동복지정책연구방법론 (2013/2 신설)	2	2	*타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ULP703	노동복지정책세미나	2	2	
	ULP706	복지국가론	2	2	
	ULP707	사회보험론	2	2	
	ULP709	사회적기업개론	2	2	
	ULP710	비교사회정책 (2013/2 신설)	2	2	
		다른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ULP901	논문세미나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4학기에 이수
	ULP902	논문지도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5학기에 이수
졸업요구학점	교과트랙 34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논문트랙 30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5. 인력관리학과 (UHR)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지도교수 지정과목	UHR101	경영학원론	2	-	*지도교수지정과목 지정자 이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기초공통과목 (3과목,6학점)	ULC301	노동법개론	2	2	*3과목 중 택2
	ULC302	노사관계론	2	2	
	ULC303	노동경제론	2	2	
	ULC304	조사방법론	2	2	
전공필수과목 (3과목,6학점)	UHR504	인력관리	2	2	
	UHR505	조직심리학	2	2	
	UHR506	조직사회학	2	2	
선택과목 (교과:11과목) (논문: 7과목)	UHR700	인력관리연구방법론 (2013/2 신설)	2	2	*타학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음.
	UHR702	경영전략	2	2	
	UHR703	인력관리세미나	2	2	
	UHR704	조직개발론	2	2	
	UHR705	기업과 사회	2	2	
		다른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UHR901	논문세미나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4학기에 이수
	UHR902	논문지도	-	2	*논문트랙 신청자는 5학기에 이수
졸업요구학점	교과트랙 34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논문트랙 30학점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6. 연구과정 교과과목

구분	교과목명	시간	학점	비고
필수과목	석사과정의 모든 학과의 필수과목	6	6	총 3과목 선택
소 계		6	6	
선택과목	기타 석사과정의 모든 과목	6	6	총 3과목 선택
소 계		6	6	
합 계		12	12	

가. 연구과정의 수학기간은 1년이며, 총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나. 선택과목은 석사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과목 중에서 택할 수 있음.

각 교과목 교수요목

1. 전체학과 기초공통과목

교과목명	교과목 소개
ULC301 노동법개론	노동법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ULC302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환경적인 요소와 노사관계의 새 주체의 특징을 먼저 규명한 후, 노조결성, 노사협상, 고충처리, 분쟁조정, 경영참가, 노동자복지 등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들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지식을 강의함.
ULC303 노동경제론	노동의 수급, 임금결정, 인적자본, 소득분배, 한국의 노동문제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ULC304 조사방법론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소개한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문제의 선정, 개념적 틀의 구성, 가설 설정, 조작적 정의와 측정, 조사설계, 신뢰도와 타당도, 자료수집, 자료분석 등의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사회과학 연구문헌을 분석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경험적 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 노동법학과 (선수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ULL101 법학개론	법의 형평,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반론과 계약법 기초이론을 다룬다.
ULL501 집단적노사관계법	집단적 자치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는 강좌로써,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집단적 자치의 주체를 이루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 관한 주요 내용(개념, 법적 지위, 내부조직원리 등), 그리고 집단적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조정 그리고 쟁의행위 등의 주요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ULL502 개별적근로관계법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강좌로써, 근로관계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취업규칙 및 근로관계 이전 등의 내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ULL509 노동소송법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등을 노동위원회법과 연계하여 중심으로 다룬다. 이에 덧붙여 산재보상 관련된 주요쟁점을 산재소송의 측면에서 함께 다룬다.
ULL700 노동법연구방법론	노동법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판례분석, 문헌연구 및 해석론 등 연구논문 및 졸업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 수 있다.
ULL705 민사책임법론	근로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좌이다.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이론, 채권관계의 기본구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ULL709 노동법특수문제연구 I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다른 특별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ULL710 노동법특수문제연구 II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외한 다른 특별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본법」 및 주요 고용관련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을 대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ULL711 비교노동법I	외국노동법제와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도모한다.
ULL712 비교노동법II	외국노동법제와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도모한다.

3. 노사관계학과 (선수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UIR101 경영학원론	인사, 재무,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국제경영 등 경영학의 제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움.
UIR501 노사관계이론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을 시대별로 강의함으로써 노사관계에 관한 사상의 다양성과 노동운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
UIR502 비교노사관계론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
UIR503 공공부문노사관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환경적 요소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체들의 특징을 규명하고, 노조결성, 노사협상, 고충처리, 분쟁조정, 경영참가 등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제과정들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지식을 민간 부문 노사관계와 비교하여 강의함.
UIR700 노사관계연구방법론	노사관계 연구와 관련한 제반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개별 연구 및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 수 있다.
UIR701 노동운동사	세계와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한 사건과 사상을 시대순으로 조명함으로써,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함.
UIR702 노사관계세미나	노사관계에 대한 주제를 한 학기동안 토론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특정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충하고자 함.
UIR703 노동쟁의및조정중재	노사간의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고려사항들을 강의하고, 노동쟁의에 대신하는 방안으로서 조정과 중재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함.
UIR704 경영참가및노사협조	노동조합과 피고용인의 경영참가와 노사협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산업민주주의 측면과 효율성제도의 양 측면에서 다루고, 경영참가와 노사협조의 실무 사례연구를 통하여 강의함.

4. 노동경제학과 (선수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ULE101 경제학원론	소비자, 생산, 분배, 국민소득계정, 재정금융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을 원론수준에서 다룬다.
ULE502 단체교섭론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과 한국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정부의 역할이나 사용자단체의 역할 및 사용자들의 태도나 전략 및 노동조합의 대응 등을 다룬다. 또 단체교섭의 최근변화와 근로자 경영참여를 강조하는 HRM정책과의 관계 등을 다룬다.
ULE501 노동시장론	노동공급, 노동수요, 교육 및 훈련, 임금결정, 소득격차, 내부노동시장, 실업 등의 주제에서 외국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헌(책이나 논문 등)들을 소개하고 국내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국내문헌이나 자료를 검토한다.
ULE505 노동조합론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과 한국의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구조상의 국가별 특성을 다루고 최근에 노동조합활동의 변화를 서술하고 분석한다.
ULE700 노동경제연구방법론	노동시장 연구와 관련한 제반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개별 연구 및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론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 수 있다.
ULE702 노동경제세미나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주요한 이슈를 세미나 방식으로 다룬다. 예를 들면 여성노동, 청년실업,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과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국내나 선진국의 노사관계 역사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ULE703 노동시장세미나	노동시장의 주제들 중에서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주제로 선택하려는 2-3개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준비를 위한 외국문헌검토 및 국내자료검토와 분석을 유도한다.
ULE704 노동과정론	마르크스의 노동과정론으로부터 출발하여 Braverman에 기초한 테일러리즘의 해석 및 최근의 근로자 경영참여나 HRM에 대한 Smith and Thompson의 마르크스적 관점을 소개한다.
ULE705 비교노동체제론	국가별 노사관계제도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노사관계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선진국들끼리의 비교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일본, 아시아 개발도상국, 동유럽 및 아시아 전환경제국가 등의 노사관계도 고려될 수 있다.
ULE706 노동조합및단체교섭세미나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서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주제로 선택하려는 2~3개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준비를 위한 외국문헌검토 및 국내자료검토와 분석을 유도한다.

5. 노동복지·정책학과 (선수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ULP101 행정학원리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개관한다.
ULP102 사회학개론	사회학의 기초 개념과 다양한 이론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
ULP503 노동복지론	노동복지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초과목으로 노동복지의 의미와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이것의 정책적 함의와 함께 한국의 노동복지 정책을 개괄한다.
ULP507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 관한 이론과 현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ULP508 노동사회학	노동복지와 정책을 독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논의하는 과목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에 관한 사회학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ULP700 노동복지정책연구방법론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연구와 관련한 제반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핵심이론과 방법론적 지식을 전달받고 익힐 수 있다.
ULP703 노동복지정책세미나	노동복지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토의하고 노동정책관련 이론에 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노동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정책의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ULP706 복지국가론	복지국가에 관한 기본 논의에서부터 오늘날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비교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ULP707 사회보험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생활 기초보장에 관한 이론과 현실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ULP709 사회적기업개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탐구, 비교연구하여 한국사회의 토양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위상,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점검하여 바람직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강구한다.
ULP710 비교사회정책	한국과 유럽의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의 사회정책의 특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6. 인력관리학과 (선수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UIR101 경영학원론	인사, 재무, 마케팅, 회계, 생산관리, 국제경영 등 경영학의 제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움
UHR504 인력관리	인사계획, 채용, 배치, 훈련, 평가, 보상 등 기업에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제과정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인 지식을 함양케 함.
UHR505 조직심리학	조직내 구성원의 행동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직행동에 대한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
UHR506 조직사회학	조직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종합 과학적 시각으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조직과 조직기술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설계 및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조직성장, 조직과 혁신, 조직변화관리, 조직학습, 조직문화, 조직의 쇠퇴와 변신 등을 연구함.
UHR700 인력관리연구방법론	인력관리 학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론을 학습하고 토론한다. 노동대학원의 졸업요건인 논문작성을 위해 진행되는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수업에 앞서 기초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수업으로서 상세한 통계적 실습과 해석이 아닌, 개괄적인 방법론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사례연구, 통계적 실증연구 및 질적 연구 등에 대한 구분과 토론을 시작으로 논문 작성의 길잡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UHR702 경영전략	행동과학에 기초를 둔 관리전략이론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과목임. 내부적 차원에서는 목표설정을 포함한 계획과 자원의 배분을, 그리고 외부 환경적 차원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경쟁을 살펴봄으로써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연구함.
UHR703 인력관리세미나	인적자원관리상의 각 주제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으로써 직무분석 및 설계와 관련된 직무연구, 모집,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그리고 임금, 복리후생 등의 보상관리의 주제들을 세미나형식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목임.
UHR704 조직개발론	조직의 과제를 해결하고 개선하여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행동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생산성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구조와 과정의 계획된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UHR705 기업과 사회	사회속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업이 기업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관계, 환경과 기업의 관계, 규제와 자율규제 등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사회의 역동성을 살펴본다.

대학원 학칙

<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려대학교 학칙」 제3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율체계) ① 이 학칙은 본교에 설치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이하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모든 대학원을 통칭한다)에 공통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다.

② 대학원에 공통되는 사항 중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 특유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대학원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준용) 이 학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2장 학적관리

제1절 학적의 발생

제1관 입학

제4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 ②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 ③ 지원자의 학위종류에 따라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5조(입학정원) ① 입학정원은 엄정하게 관리한다.

②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학문수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원의 입학)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의 입학이 허용된 사람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8조(지원절차) 입학을 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다.

제2관 편입학, 재입학

제9조(편입학) 총장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재입학) ① 총장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사람
 2.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
 3. 그밖에 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1조(휴학)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제12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대학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14조(자퇴)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4.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5.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위과정, 학과·전공 등

제16조(학위과정) ① 모든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17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과정생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학과·전공) ①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 ② 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류상의 독립성, 학문수요, 본교의 교육목적과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9조(학과·전공의 변경) 입학 이후에 학과·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협동과정과 계약학과) ①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총장은 협동과정과 계약학과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융합전공) 대학원에는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제2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21조(수업연한 일반) 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2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
 3. 학·석사연계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4.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업연한은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1년 이내
 2. 박사과정: 6개월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 1년 이내
 4.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1년 이내
-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교육과정, 학점취득, 학점인정

제24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제25조(학기별 학점취득) ① 학기별 학점취득의 상한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6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본교 대학원 선수강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석사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수료와 학위취득

제27조(수료의 방법과 요건) ① 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취득에 의한 수료
2. 그 밖에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수료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한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위취득)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 또는 그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학생에게 학위과정에 따라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제29조(수료연구생) ① ‘수료연구생’이란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② 수료연구생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30조(지도교수, 지도위원회) ①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도교수와 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위구분) 본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2. 박사학위
3. 명예박사학위

제32조(학위청구의 자격과 연한) ① 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의 자격,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위의 명칭) 각 대학원별 학위취득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명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①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 또는 복수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명예박사) ① 문화,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서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일반대학원장의 제청

제36조(학위취소) 본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학위를 취소한다.

1.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대학원장의 제청

제4장 학생활동

제37조(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단체를 둔다.

② 본교는 「고려대학교 학칙」 제2조가 정하는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8조(학생의 일반의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학칙의 개정

제41조(절차의 원칙)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대학원장이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함

2.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대학원장이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함

3. 교무위원회의 심의

4.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5.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6.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함

7. 시행

제42조(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4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제4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장, 제41조, 제42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7조, 제22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의2 신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개설된 융합전공은 이 개정학칙 제20조의2(융합전공)을 적용한다.

대학원 학칙 노동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일부개정

2017. 3. 1 개정

2021. 3. 1 개정

<노동대학원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노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대학원은 노동문제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 및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지도적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 (수업)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제5조 (수업연한 단축) 연구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학과 변경) ① 입학 후 학과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이수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자는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주임교수의 승낙서
3. 성적증명서

제7조 (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소정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② 휴학은 6개월(1학기) 또는 1년(2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 1년 6개월(3학기)을 넘지 못한다.

③ 군입대 휴학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되 의무복무기간에 한하여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 휴학인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1년까지 가능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매학기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지정과목 지정자는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10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논문트랙을 선택하는 자는 체계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4학기에는 논문세미나, 5학기에는 논문지도를 수강하여야 한다.

④ 본교의 다른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수강신청 정정) 이미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8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교수 지정과목) ① 지도교수는 대학에서 다른 전공분야를 이수한 입학자에 대하여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지정 여부는 입학 첫 학기 시작 1달 이내에 정한다.

제13조 (지도교수) ① 학생의 입학시부터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담당한다.

② 논문트랙 신청시 제14조 제2항의 절차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15조 (학위청구의 종류 및 자격) ① 학칙 제32조에서 정한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최소 이수학점 취득과 평균평점 3.0 이상이며, 본 조 ②항 또는③항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논문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 합격
 2. 지도교수의 논문제안서 승인
 3. 논문 중간발표 통과
 4. 수료요구 30학점(논문세미나, 논문지도 포함) 이상 이수
- ③ 교과트랙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종합시험 합격
2. 수료요구 34학점(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제외) 이상 이수

제16조 (학위청구 트랙 신청시기 및 절차) 학위청구 트랙 신청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첫 번째 종합시험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위청구 트랙변경 및 절차) 학위청구 트랙은 제16조의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재학연한 초과자의 학위취득연한 연장) ①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학

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득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연한 연장 승인은 1회에 한하며,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위취득연한 연장은 신청서[별지서식2]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④ 학위청구연한 연장 신청시 학위청구트랙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학과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른 학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학위취득연한 연장이 승인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수료생의 교과트랙에 의한 학위취득) 수료 이후 교과트랙에 의한 학위취득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경과한 이후라도 대학원장이 재입학을 허가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의 석사학위 청구 연한은 재입학 년도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20조 (학위청구논문 계획서) 논문트랙을 선택하는 자는 제4차 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간발표는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제2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 논문원고 3부와 함께 논문심사료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5월 31일, 후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종합시험의 종류)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

제25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의 응시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6조 (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2.12.31>

제28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가 추천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 (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 3. 1>

제31조 (장학금) ① 대학원에서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때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3조 (전문교육과정) ① 1년 과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과정은 공개강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4조 (연구생) ①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과 같으며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35조 (연구기간 및 교과이수) ①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36조 (대학원위원회 회의) ①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학사운영위원회) ① 학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2조, 제3조 2항, 제6조 2항 3호, 7조 2항(신

설), 7조 3항(신설), 7조 4항(항조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2항, 제14조 1항, 제14조 3항(신설), 제14조 4항(신설), 제20조, 제22조(조삭제),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25조, 제26조 2항, 제26조 3항(신설), 제27조 1항, 제29조 1항, 제29조 2항, 제31조 1항, 제31조 2항, 개정]

부 칙

1. 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항, 제7조 3항, 제11조, 제13조 1항, 제13조 2항(신설), 제13조 3항(신설), 제14조(신설), 제15조(신설), 제16조, 제17조 1항(신설), 제17조 2항, 제18조, 제29조 2항, 개정)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입학자도 수료자를 제외하고 개정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8조 신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6조 제2항 제2호, 제7조 조명칭, 제1항, 제5항 신설, 제8조,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3호, 제2항 제5호, 제2항 제6호,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3항 삭제,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삭제, 제3항 제2항으로 조정, 제34조 제1항, 35조 조명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2항)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제30조 삭제, 제36조의2 신설, 별지서식2 신설)
2.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별지서식 1] 공개강좌 이수증서

제 호

이 수 증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 대학교 노동대학원이 개설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노동대학원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 려 대 학 교 총 장 ○ ○ ○ (인)

노동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

2009. 3. 1 제정
2017. 3. 1 일부개정
2021. 3. 1 일부개정
<노동대학원 행정실>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노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금 기부자 및 각종 장학단체 등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대학원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대학원 재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 수급자 수와 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4 조 (종류)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 ① 성적장학금
 - ② 면학장학금
2. 근로봉사장학금
 - ① 봉사장학금
 - ② 조교장학금
 - ③ 근로장학금
3. 기금장학금
 - ① 노동장학금
 - ② 후배사랑장학금
4. 공훈장학금
 - ① 대학발전장학금
 - ② 특별장학금
5. 교외장학금

제 5 조 (일반장학금) ① 일반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가. 종류

-최우수장학금 : 학과별 직전 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지급

-우수장학금 : 학과별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나. 지급대상 : 최소 취득학점을 6학점(해당 학기 이전에 2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4학점) 이상인 자로 하되, 다음의 학점은 제외한다.

-논문세미나

-논문지도

-선수과목

다. 선발방법 : 최우수장학생 및 우수장학생이 경합할 경우에는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 학기 수가 많은 자, 직장을 갖지 않은 진업학생, 연장자 순서로 선발한다.

라. 미등록자 처리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할 경우에는 학과별 성적 차순위 자에게 지급한다.

2. 면학장학금 : 면학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신청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장학금은 대학원의 장학금 예산을 기본재원으로 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에 조성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제 6 조 (근로봉사장학금) ① 근로봉사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활동 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하고,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2. 조교장학금 :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조교로 임용된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근로장학금 : 대학원에서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7 조 (기금장학금) ① 기금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장학금 : 노동조합 등 노동관련 단체에서 전업으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재원은 대학원에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한다.
 2. 후배사랑장학금 : 직전 학기 졸업생이 기탁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원에 조성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
- ② 기금장학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8 조 (공훈장학금) ① 공훈장학금은 각 호와 같다.

1. 대학발전장학금 :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지급한다.
 2. 특별장학금 :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대학원장 또는 학과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 ② 공훈장학금의 세부지급기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조 (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금 기부자 및 각종 장학단체가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교외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조 <삭제>

제 11조 (보칙) 본 세칙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노동대학원 장학금 운영내규(노동대학원 자체규정)는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노동대학원 노동장학금 지급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1. 노동대학원 연락처

가. 노동대학원장 및 각 학과 주임교수

성명	직책	연락처 (3290~)	e-mail	연구실
박지순	노동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875	augsburger@korea.ac.kr	국제관 125A
김상중	노동법학과 주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874	sangjoong@korea.ac.kr	법학관 신관 505
김광현	노사관계학과 주임교수 경영대학 교수	2625	kimk@korea.ac.kr	경영본관 412호
김세익	노동경제학과 주임교수 경제학과 교수	5135	seikkim@korea.ac.kr	정경관 329호
김원섭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교수 사회학과 교수	2087	kimwonsub2@korea.ac.kr	우당교양관 509호
김태규	인력관리학과 주임교수 경영대학 교수	2828	kimt@korea.ac.kr	LG-POSCO 422호

나. 노동대학원 행정실

직책	성명	업무	연락처 (3290~)	e-mail (korea.ac.kr)
차장	김승환	노동대학원 기획 비학위과정 관리	1410	utah
직원	이현정	석사 입학, 교무, 학적	1412	grace20
	오수진	비학위과정 실무	1413	sms147